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58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정희용·고동진·최수진

김상훈 • 박충권 • 정동만

김태호 • 박준태 • 김선교

주호영 · 서천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 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 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허가사항) ① ~ ⑤ (생	제35조(허가사항)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대
	하여 사후에 허가를 할 수 있
	<u>다.</u>